

의안번호	2203208
의 퇴 인	한정애의원
회 답 일	2024.9.30.
추계번호	24D3181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보호자인 유아를 생후 36개월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,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억 4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유아의 양육(안 제53조)	47	48	49	50	51	245

주: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 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3조 (유아의 양육)	－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보호자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소장은 이 경우 생후 36개월에 이르기 까지 허가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53조의3 (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 등)	－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(제2항) －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가 수용자를 접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·재량 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3조 (유아의 양육)	○	-
2	안 제53조의3 (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 등)	×	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나, 지원방법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유아의 양육기간과 입소 및 퇴소 시 연령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불충분하여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양육유아의 수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함

- 2019년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의 양육유아 수의 평균은 11명임

[표1] 최근 6년간 양육유아 현황

(단위: 명)						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.9.
양육 유아	11	9	9	9	12	14

주: 2024. 9. 현재 기결 10명, 미결 4명 수용 중 (법무부에 따르면, 현재 기결수형자의 양육유아는 천안개방교도소에 전담하여 수용하고 있으며,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각급 구치소 등에 수용하고 있음)

자료: 법무부

- 개정안에 따라 양육기간이 현행 18개월에서 36개월로 기간이 2배 연장될 경우, 매년 교정시설에서 보호하는 양육유아 수가 6명이 추가된다고 가정

- 양육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육아시설 증축비는 추계에서 제외함

- 양육 개월 수 연장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아동을 위한 시설 개조·증축 비용 등은 현행 예산 범위에서 충당 가능한 것으로 보임
- 법무부 교정교화 사업의 교화시설 및 장비개선 내역에 양육유아 시설 관련

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육아시설 보강예산으로 전체 양육유아에 대해 1억 3,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⁾를 적용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매년 추가되는 양육유아 수를 추정하고, 이에 양육유아 1인당 연간 예산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
 - (추가 양육유아 수) 전제에 따라 매년 교정시설에서 보호하는 양육유아 수는 6명임

[표2] 추가 양육유아 수: 2026~2030년

(단위: 명)					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추가 양육유아 수	6	6	6	6	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1인당 예산) 2024년 예산 기준 양육유아 1인당 연간 약 749만원²⁾의 예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
 - 양육유아 1인당 예산은 위생용품 1개월 32만원, 급식가산금 1일 1만원임³⁾

[표3] 1인당 예산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만원)					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1인당 예산	782	799	816	833	84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4년 7월 기준, 단위: %)							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6	2.2	2.2	2.1	2.1	2.1	2.0

2) 산출근거: (위생용품 비용+급식가산금)×12개월

3) 자료: 법무부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양육기간이 현행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4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추가 양육유아 수 (a, 명)	6	6	6	6	6	-
1인당 예산 (b, 만원)	782	799	816	833	849	-
추가재정소요 (a x b, 백만원)	47	48	49	50	51	24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